

□ 신의료기술평가 신청

- 신의료기술평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이미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사용대상, 사용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임

□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여부 심의

-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방법, 소위원회 구성 결정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여부가 신청자에게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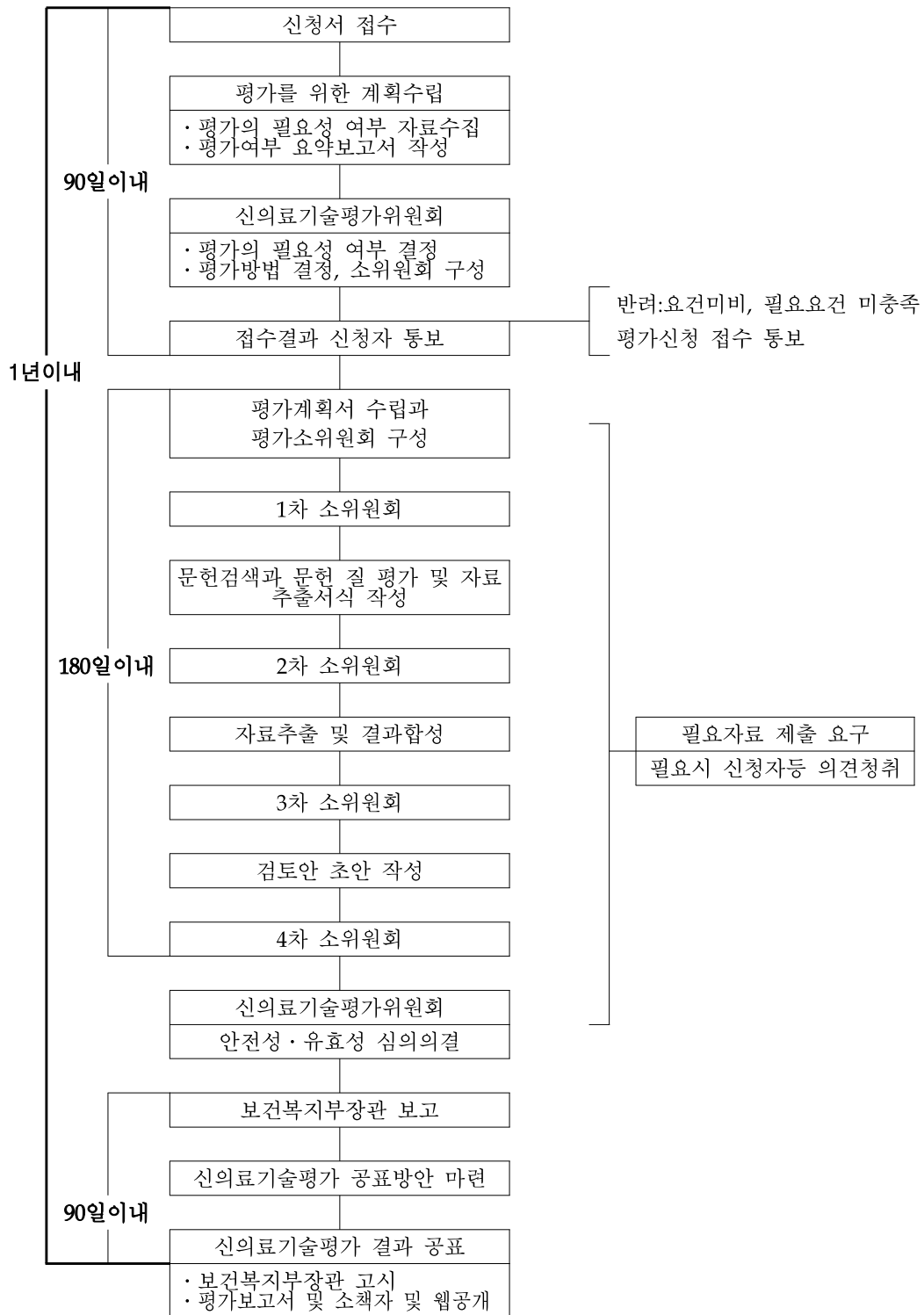
□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

-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중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
- 평가방법에 따른 계획과 문헌검색, 질 평가 및 평가목적에 따른 자료추출이 수행되고 종합된 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안 마련. 이 과정은 18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

□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

□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

-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, 사용대상과 시술방법을 고시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



신의료기술평가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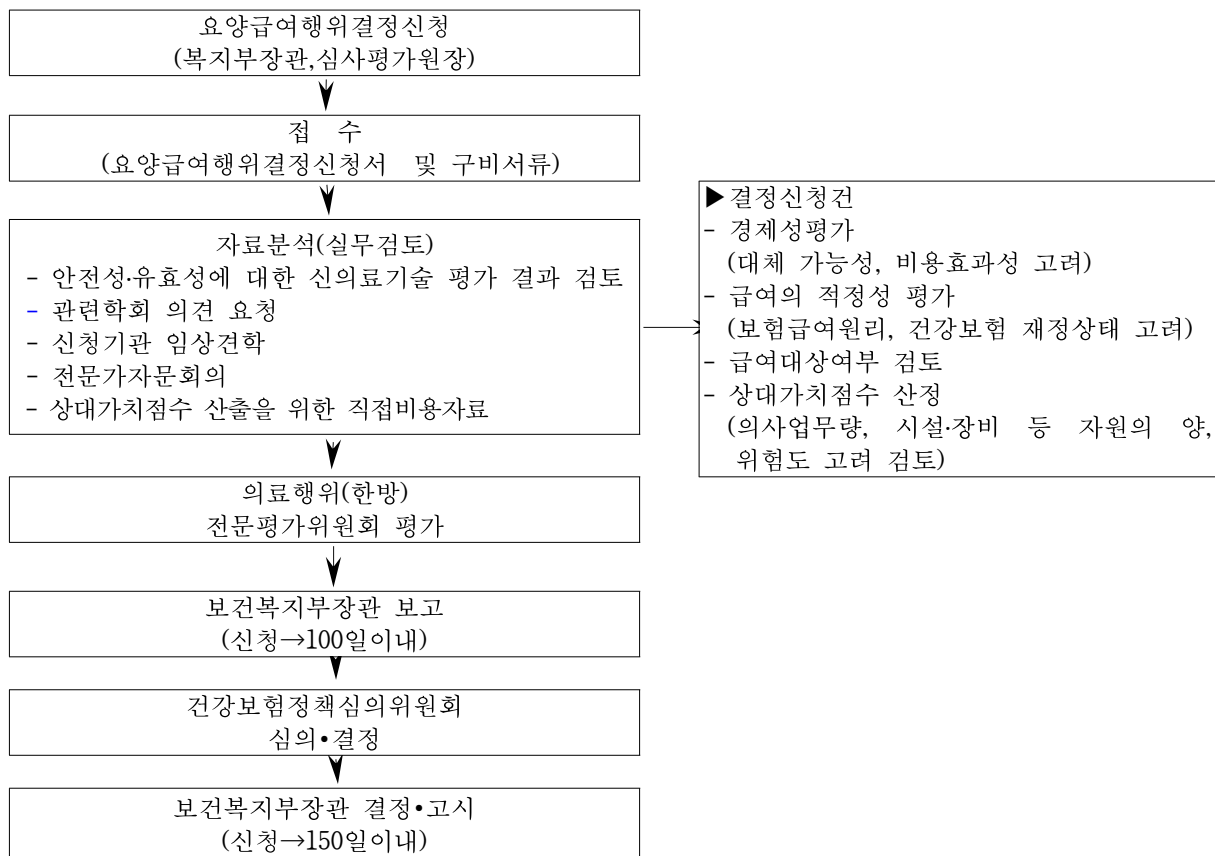
□ 영양급여 결정신청의 주체: 영양기관

□ 결정신청 시기

-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·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

□ 절차

- 영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와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통보서,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, 비용효과에 관한자료, 국내외의 실시 현황에 관한자료, 소요장비 등의 식약청 허가자료,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제출



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 절차